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청에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립소방병원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

9.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제4조제1항 중 “화재예방총괄과·소방분석제도과”를 “예방정책과·예방분석제도과”로,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을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총괄과장”을 “예방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분석제도과장”을 “예방분석제도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장비총괄과·소방항공과·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을 “첨단장비과·소방항공과·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으로, “소방산업과장”을 “소방산업진흥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총괄과장”을 “첨단장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산업과장”을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을 “국립소방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립소방박물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1명(학예연구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5급 1명)은”을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7장(제13조)을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4”를 “285”로, 일반직 계 “41”을 “42”로,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0”을 “11”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5”를 “287”로, 일반직 계 “42”를 “44”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의무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및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1”을 각각 “1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91”을 “516”으로, 소방공무원 계 “391”을 “401”로,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41”을 “44”로, 소방위 “63”을 “66”으로, 소방장 “75”를 “78”로, 일반직 계 “100”을 “115”로,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및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각각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491”을 “516”으로, 소방공무원 계 “391”을 “401”로, 소방령 “23”을 “24”로, 소방경 “42”를 “45”로, 소방위 “62”를 “65”로, 소방장 “75”를 “78”로, 일반직 계 “100”을 “115”로,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향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소방정대기관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향해담당),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기관담당) 및 전문경력관 나군(소방정대통신담당) “3”을 각각 “6”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5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119대응국) ① ~ ⑤ (생략) ⑥ 구급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119대응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7. (현행과 같음) 8. <u>국립소방병원 운영, 평가 및 지도·감독</u> 9. <u>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u>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u>화재예방총괄과·소방분석제도과·위험물안전과</u>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u>화재예방총괄과장</u> 은 소방준감으로, <u>소방분석제도과장·위험물안전과장</u>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u>화재예방총괄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③ <u>소방분석제도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제4조(화재예방국) ① ----- -- <u>예방정책과·예방분석제도과</u> ----- ----- <u>예방정책과장</u> 은 소방준감으로, <u>예방분석제도과장</u> ----- ----- ----- -. ② <u>예방정책과장</u> ----- -----. 1. ~ 13. (현행과 같음) ③ <u>예방분석제도과장</u> ----- -----. 1. ~ 1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소방항공과·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③·④ (생략)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
----- 첨단장비과·소방항공과·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

-----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
-----.

② 첨단장비과장-----
-----.

1. ~ 1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
-----.

1. ~ 16. (현행과 같음)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장 한시조직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국립소방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립소방박물관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1명(학예연구사 1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
-----.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		•				
			284		285			+1	
일	반	직	•		•				
계			41		42			+1	
•			•		•				
•			•		•				
행	정	주							
•	공	업							
•	임	업							
•	간	호							
•	시	설							
•	방	재							
안									
전	주	사							
•	전	산							
•	방	송							
•	통	신							
•	주	사							
•	기	록							
•	연	구							
•	사								
•	시	설							
•	연	구							
•	사								
또	는								
소	방	경							
•			•		•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85</u>	• <u>287</u>	+2
일반직 계	• • <u>42</u>	• • <u>44</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 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 • <u>11</u>	• • <u>12</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 • <u>11</u>	• • <u>12</u>	+1

	.	.	.	
	.	.	.	

[별표 5]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91</u>	<u>516</u>	+25
소방공무원 계	<u>391</u>	<u>401</u>	+10
·	·	·	
·	·	·	
소방령	<u>23</u>	<u>24</u>	+1
소방경	<u>41</u>	<u>44</u>	+3
소방위	<u>63</u>	<u>66</u>	+3
소방장	<u>75</u>	<u>78</u>	+3
·	·	·	
·	·	·	
일반직 계	<u>100</u>	<u>115</u>	+15
·	·	·	
·	·	·	
전문경력관 가군	<u>3</u>	<u>6</u>	+3
(소방정대항해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u>3</u>	<u>6</u>	+3
(소방정대기관담당)			
·	·	·	

·	·	·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항해담당)	<u>3</u>	<u>6</u>	+3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기관담당)	<u>3</u>	<u>6</u>	+3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통신담당)	<u>3</u>	<u>6</u>	+3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91</u>	<u>516</u>	+25
소방공무원 계	<u>391</u>	<u>401</u>	+10
·	·	·	
·	·	·	
소방령	<u>23</u>	<u>24</u>	+1
소방경	<u>42</u>	<u>45</u>	+3
소방위	<u>62</u>	<u>65</u>	+3
소방장	<u>75</u>	<u>78</u>	+3
·	·	·	
·	·	·	
일반직 계	<u>100</u>	<u>115</u>	+15
·	·	·	
·	·	·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항해담당)	<u>3</u>	<u>6</u>	+3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대기관담당)	<u>3</u>	<u>6</u>	+3
·	·	·	

·	·	·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항해담당)	<u>3</u>	<u>6</u>	+3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기관담당)	<u>3</u>	<u>6</u>	+3
전문경력관 나군 (소방정대통신담당)	<u>3</u>	<u>6</u>	+3
·	·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소방정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의2제1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영남119 특수구조대	부산항만 소방정대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항만 소방정대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